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 11. 26 선고 2014가단30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14. 11. 12.

판결 선고 2014.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갑종지 1,488㎡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12, 11,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나) 부분 159㎡ 및 같은 도면 표시 6, 7, 8, 12, 6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다) 부분 13㎡에 관하여 2010. 3. 22. 또는 2011. 3. 28.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천시 D(이하 'D'라고만 한다) C 전 566㎡는 1986. 8. 5. E 토지에서 분할되어 1990. 9. 13. C 잡종지 566㎡로 지목이 변경된 후 1998. 4. 7. E 토지 중 913㎡와 합병되어 C 잡종지 1,479㎡가 되었고, 1998. 10. 28. F 토지 중 9㎡와 합병되어 C 잡종지 1,488㎡(이하 'C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G 전 216㎡는 1990. 9. 10. G 잡종지 216㎡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98. 4. 7. H 토지 중 114㎡, I 토지 중 79㎡, J 토지 중 271㎡, K 토지 중 183㎡, L 토지 중 629㎡와 합병되어 D 잡종지 1,492㎡(이하 'G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M이 1990. 3. 22. G 토지 위에 주유소 및 사무실 2층 건물과 주유대 단층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1990. 4.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C 토지 위에는 1985. 10. 23.경 음식점, 소매점, 식당 단층 건물이 준공되었다.

마. G 토지와 C 토지의 소유권 변동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985. 3. 14.	M	1968. 12. 31.	M
1991. 3. 28.	N	1991. 3. 30.	O
2001. 6. 19.	P	1991. 7. 12.	N
2003. 7. 14.	Q	2001. 4. 23.	R
2006. 9. 29.	S	2005. 9. 27.	T, U 각 1/2
2008. 7. 2.	원고	2008. 7. 2.	V
		2009. 12. 4.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12, 11,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9㎡[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6, 7, 8, 12,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다) 부분 13㎡[이하 (다) 부분이라 한다]를 1990. 3. 22. 또는 늦어도 1991. 3. 28.부터 원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통산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나) 부분과(다) 부분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 부분과 (다)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G 토지의 전 소유자가 (나) 부분과(다) 부분을 점유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고, 점유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기간이 20년이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N은 1991. 3. 28. G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해 7. 12.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C 토지는 2001. 4. 23. R에게, G 토지는 2001. 6. 19. P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N이 1991. 3. 28. G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1. 7. 12.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N이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N의 (나) 부분 및 (다) 부분의 점유는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있는 시점은 G 토지와 C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2001. 4. 23.인데,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진혁

별지

1) 원고는 2014. 11. 1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2010. 3. 2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2011. 3. 28.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는데, 점유취득시효를 판단함에 있어서 점유의 개시시점과 그에 따른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시점은 간접사실로서 원고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점유의 개시시점과 그에 따른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시점을 달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을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않는다.